

에 너 지 관 리 공 단

문서번호 (전화) 19 . . .

수 신 발 신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인]

검 사 대 상 기 기 불 합 격 통 지 서

1.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무소 소재지			
⑤설치장소소재지			
⑥검사신청종류			
⑦ 불 합 격 사유			
⑧ 관 련 규 정			

2. 따라서 위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며, 만일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6월이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사용을 허용하니 기기를 개·보수하여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